

중견기업의 조세특례 현황과 개선과제*

김신언**·구성권***

Ⅱ 목 차	
I. 서 론	281
II.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현황	282
1. 현행 법률상 중견기업의 범위	
2. 중소·중견기업의 세제혜택 차이 분석	
III.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90
1. 연구개발 및 투자관련	
2. 고용 및 향후 지속가능성 관련	
IV. 결 론	303

* 본 논문은 2024년 11월 한국중견기업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제출된 PDF 토론문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주저자 : 세무사(엔트세무법인), 법학박사, 미국일리노이주변호사
*** 교신저자 : 명지전문대학 세무회계과 교수
**** 투고일 : 2025. 3. 22. 1차수정일 : 2025. 4. 22. 게재확정일 : 2025. 5. 9.

<국문초록>

기업의 규모에 따른 세제혜택의 차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전단에서 규정한 과세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합리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편중된 현행 조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대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중견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하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 손꼽힌다. 특히 중견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연구개발이나 고용증대 등의 세제혜택 면에서 차별을 받아야 할 정당한 법리적 사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기업의 규모에 따른 세제혜택의 차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후단에서 정한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수출실적, 고용확대 및 임금상승 능력, 연구개발 및 투자 지표 등 국내외 여러 실증분석에서 중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에 비하여 과도하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자여력이 있는 중견기업의 혜택을 중소기업 이상으로 늘려주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유인을 없애야 한다. 다음으로 중소기업보다 근로자 교육훈련, 고용증대 및 임금인상의 효과가 큰 성장지향형 중견기업을 찾아 맞춤형 세제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처럼 우량 중견기업이 경영자원을 집약해 수익과 임금 상승을 도모할 수 있도록 M&A 등을 통해 기업규모를 확대하는 조세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견기업의 인적 가업승계 요건 완화하여 수증인이나 상속인이 아닌 전문경영인을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

▶ **주제어:** 중견기업, 효율성, 연구개발, 투자촉진, 고용증대

I. 서론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에서 정부는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목적을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세제혜택에 대해서도 업종과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을 세제상 우대하되, 중소기업은 중견기업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공평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공평을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국민경제에 유익한 파급효과를 주는 것이라 단언할 수도 없다.

2022년 기준 국내 중견기업 수는 전체 기업의 1.3%(5,576개)¹⁾를 차지하지만 전체 기업군 대비 매출은 14.4%(961조원), 고용은 12.8%(158.7만명), 수출액은 18%(1.231억 달러)를 차지²⁾하고 있어서 경제·조세정책의 효율성 면에서 중견기업의 역할이 훨씬 크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 산업생태계의 핵심 역할을 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 2022년 기준 국내기업의 86.6%(1,657개)를 차지한다.³⁾ 상식적으로 중산층이 많으면 건강한 사회로 인식되는 것처럼 중견기업이 더 많아지는 것이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
- 1) 중견기업 이외의 기업 수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97.8%인 404,538개, 대기업이 0.8%인 3,406개이다.
 - 2) 2023년 기준 중견기업 수는 5,868개로 전년대비 5.2%, 종사자는 170.4만명으로 7.4%, 매출액은 984.3조원으로 2.4%, 증가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중견기업 기본 통계 발표”, 2025. 1. 6. 보도자료, 2~5면).
 - 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현안 자료집”, 2024. 6., 50면.

그런데 우리 경제와 산업의 허리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 수를 확대하는 데 있어 가장 걸림돌은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급격히 축소되는 조세지원 원으로 조사되었다. 중견기업 중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한 주요 원인은 조세지원 축소(60.8%), 중소기업에 더 적합한 업종(14.9%), 금융지원 축소(14.2%), 공공조달시장 등 판로 제한(6.3%) 순이었다.⁴⁾ 실제로 2022년 기준 5년간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이 271개에 달하기도 하였다.⁵⁾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는 것도 문제이다.⁶⁾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2월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⁷⁾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단지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을 연장시키는 것보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중견기업에 맞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절실하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와 더불어 향후 조세특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II.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현황

1. 현행 법률상 중견기업의 범위

중견기업의 기준은 프랑스가 2008년에 경제현대화법⁸⁾을 개정하여 종업원

4) 산업통상자원부, 앞의 보도자료, 12면.

5) 세정일보, “5년간 중견기업 → 중소기업 회귀기업 271곳...왜?”, 2022. 10. 24. 기사,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6883>(검색일 : 2025. 1. 23.).

6) 세계뉴스통신, “중견기업 4곳 중 1곳 ‘중소기업’ 회귀 검토”, 2013. 7. 29. 기사, <https://blog.naver.com/antnews/30172876491>(검색일 : 2025. 1. 23.).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8) No. 2008-1354 of Article 51 of the law on modernisation of the economy.

5,000명 미만 매출액 15억 유로 혹은 자산 20억 유로 이하 규모의 회사를 지정한 것이 시초이다.⁹⁾ OECD¹⁰⁾나 유럽연합¹¹⁾에서 기업규모는 주로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 대부분에서 중견기업(Mid-cap)을 직원 수가 250명에서 1,500명(또는 3,000명)미만인 기업으로 분류한다.¹²⁾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은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중견기업을 소중견기업(직원 250~499명)과 대중견기업(500~2,999명)으로 구분하기도 한다.¹³⁾ 반면, 미국에서는 중견기업(Middle market enterprise)의 규모를 연간 매출액 1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 사이의 기업으로 보거나, 종업원 500명에서 1,000~1,500명 사이인 기업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총자산가치로 정의하는 것을 선호하는 부류도 있다.¹⁴⁾ 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의 중견기업은 민간 부문 GDP의 3분의 1(총 매출 10조 달러)과 고용 인원은 약 4,800만 명을 차지¹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하였으나 2011. 3. 30. 「산업발전법」 제10조의2를 신설하면서 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9) 김영우, “프랑스 중견기업법의 제정배경과 시사점”, 『중견기업연구』 제3권 제1호, 한국중견기업학회, 2012, 33~34면.

10) OECD, “Enterprises by business size”,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enterprises-by-business-size.html>(검색일 : 2025. 1. 25.).

11)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executive summary of the evaluation”, 2022, p.1 : 중소기업(SMEs)도 주된 분류 기준은 상시 근로자(staff headcount)로, 보조기준을 매출액 또는 총자산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인적 요소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12) European Commission, *Study to map, measure and portray the EU mid-cap landscape*, 2022, p.13.

13) EIB(European Investment Bank), *Hidden champions, missed opportunities : Mid-caps' crucial roles in Europe's economic transition*, 2024, p.19.

14) Adam Hyes, “Middle Market Firm : Definition, Criteria, and How They Trade”, Investopedia 2022. 5. 17., <https://www.investopedia.com/terms/m/middle-market.asp>(검색일 : 2025. 1. 28.).

15) National Center for the Middle Market, “Year End 2021 Middle Market Indicator”, 2021, pp.2~3.

않는 기업을 의미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개념이 탄생하였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빠른 경제성장 이면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고용 및 성장 동력의 부재를 만회하고 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기업군을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였다.¹⁶⁾ 이후 2014년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이 한시법으로 제정¹⁷⁾되어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계 주요국보다 빨리 중견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가 이미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위 법률에서 업종별 중견기업 지원시책을 선언적으로만 규정¹⁸⁾하고 있어서 구체화된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12조¹⁹⁾와 제15조²⁰⁾에서 중견기업의 조세감면에 관한 특례와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중견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법적 권한과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성장사다리 단절 심화요인으로 지목된 조세지원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에 조세특례를 요청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한편, 「중견기업법」에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독점규제 대상인 상호출

16) 노창호,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단지 Issue & Report』 2013-08 제6호, 한국산업단지공단, 2013, 2~3면.

17) 제정 당시에는 부칙에서 2024. 7. 21.까지 10년을 한시로 정하였으나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2024. 3. 30. 개정을 통해 이를 상시화 하였다.

18) 「중견기업법」 제9조 제1항 : 정부는 기술현황 및 전망 등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견기업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9) 제12조(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0) 제15조(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자기기업집단, 금융업 등은 중견기업에서 제외²¹⁾하면서 기획재정부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견기업의 범위에서 제외²²⁾하였다. 2016년 당시 「중견기업법」의 개정취지²³⁾에 볼 때 공공기관 등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향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²⁴⁾으로 세제혜택 배제가 확대될 수 있다.

「중견기업법」은 직접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제2조 제1호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공공기관 등 여부 또는 지분소유나 출자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매출액 규모로 대기업과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세제 감면종류에 따라 중견기업의 조건을 매출액으로 다시 조정하여 직전 3개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²⁵⁾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재차 축소하는 것은 성장 기피를 유발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의 단절을 심화하는 것이라는 비판²⁶⁾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나목 : 2014년 법 제정당시에는 공공기관만 배제하였으나, 2016년에는 지방공기업 등도 제외하여 중견기업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2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1의2, 제9조 제4항(연구인력개발비 손금산입) 1의2.

23) “국내 중견기업의 수는 독일 및 일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허리층이 부실한 기업 생태계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어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도 지원할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성장을 촉진시켜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25) 조세특례제한법집행기준 6-6의4 ; 다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기업승계는 5천억원을 기준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4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26)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4년 중견기업계 세제건의”, 2024. 3., 17면.

2. 중소기업의 세제혜택 차이 분석

가. 중소기업에 한정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은 제1장 총칙(제1조~제3조)과 제7장 보칙(제142조~147조)을 제외하면 직접국세, 간접국세, 외국인투자 등과 기타 특례 4가지²⁷⁾로 구분된다. 제2장 직접국세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는 일몰로 삭제된 것을 제외하면 현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9개가 남아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혜택이 큰 것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업종 및 소재지에 따라 5~3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²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을 지나게 되면 이러한 혜택은 모두 사라진다.

〈표 1〉 2023년 귀속 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현황²⁹⁾

(단위 : 백만원)

수입금액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		일반기업 ³⁰⁾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10억 이하	90,174	110,808	0	0
20억 이하	49,717	145,881	0	0
50억 이하	60,082	344,672	0	0
100억 이하	21,042	285,774	0	0

27) 제4장 지방세(제119조~121조)는 2010년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된 이후 2010. 12. 27. 삭제되기 시작하여 2014. 12. 23. 제4항의 나머지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28)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29) 국세통계포털, “법인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고 현황”(통계표 목록 : 8-3-9)을 정리한 것임.

수입금액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		일반기업 ³⁰⁾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200억 이하	6,783	127,265	0	0
300억 이하	1,859	50,807	0	0
500억 이하	1,306	49,806	0	0
1,000억 이하	692	34,944	0	0
5,000억 이하	152	9,828	0	0
5,000억 초과	0	0	0	0
합 계	231,807	1,159,784	0	0

<표 1>과 같이 2023년 귀속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만 보더라도 232,807개 중소기업이 받은 세제감면은 1조 1,597억원에 달한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졸업하면 이러한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는 감면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³¹⁾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제감면 혜택도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지므로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나. 중견기업이 될 때 축소되는 조세특례

다음으로 R&D투자가 많은 기업이 최대 수혜를 받는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로 일몰기한이 완료된 것을 제외하면 현재 21종류가 남아있다.³²⁾ 이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30%까지 혜택을 받

30) 수입금액 규모별 중소기업에 들지 않는 법인을 의미한다.

31)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배제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등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중견기업으로 전환 시 불이익은 세제혜택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것과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율의 차이만 존재한다.

32)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1조, 제17조 규정이 2019년과 2011년, 2007년 말에 각각 삭제되었다.

지만 중견기업은 20%만 공제받을 수 있다.³³⁾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중소기업이 최대 50%인데 반해 중견기업은 30%로 줄어든다.³⁴⁾ 연평균 발생액 산출 계산에서도 중견기업은 차별을 받는다.³⁵⁾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중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50% 수준으로 혜택이 떨어진다.³⁶⁾ 글로벌 K문화를 이끄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율이 중소기업은 15%인데 반해 중견기업은 10%에 불과하다.³⁷⁾ 고용지원을 위한 인건비 공제에서도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받는 세제혜택의 절반 정도³⁸⁾에 그친다.

<표 2> 기업 규모별 세제혜택의 차이³⁹⁾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⁴⁰⁾	관련근거
연구 인력 개발	일반	25%	8%	최대 2%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 §10
	신성장·원천	최대 40%	최대 30%	최대 30%	
	국가전략기술	최대 50%	최대 30%	최대 30%	
기술 취득		10%	5%	5%	조특법 §12 ②
통합 투자	일 반	10%	5%	1%	조특법 §24
	신성장·원천	12%	6%	3%	
	국가전략기술	25%	15%	15%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15%	10%	5%	조특법 §25의6

3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 : 나목과 다목에서 가산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이나 국가전략기술 혜택을 제외한 것이다.

34)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

3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3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호 가목.

37)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제1항 제2호 가목·나목.

38)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병역특례이후 복직), 제29조의3(경력단절여성 고용), 제29조의4(근로소득 증대), 제29조의5(청년고용 증대), 제29조의6(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제29조의7(고용증대), 제29조의8(통합고용) 등.

39)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용을 직접 정리하여 작성한 것이다.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⁴⁰⁾	관련근거
병역 후 복직		30%	15%	—	조특법 §29의2
경력단절 여성고용		30%	15%	—	조특법 §29의3
근로소득 증대		20%	10%	—	조특법 §29의4
청년고용 증대(인당)		1천만원	7백만원	3백만원	조특법 §29의5
핵심인력성과 감면(청년)		90%	50%	—	조특법 §29의6 ① 1
고용증대(청년 등) 인당		1200만원	900만원	500만원	조특법 §29의7 ① 1
통합고용(청년 등) 인당		1,550만원	800만원	400만원	조특법 §29의8 ① 1
기업부설 연구소 부동산	일반	60%(취득) 50%(재산)	50%(취득 · 재산세)	35%(취득 · 재산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지특법’) §46
	신성장 · 원천	75%(취득) 65%(재산)	65%(취득 · 재산세)	50%(취득 · 재산세)	
연구인력 개발	일반	25%	8%	최대 3%	지특법 §102
	신성장 · 원천	30%	20% + α	20% + α	
연구인력 설비투자		6%	3%	1%	지특법 §103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7%	5%	3%	지특법 §109

반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창업자금 증여세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 주식의 포괄 교환 · 이전 과세특례,⁴¹⁾ 지역 간 균형 발전,⁴²⁾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등은 기업 규모에 따라 특별히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3장 간접국세(제105조~제118조의2)와 제5장 외국인투자(121조의2~제121조의7) 등에 대한 조세특례에서도 기업규모에 따른 세제상 차별은 없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에서 중견기업은 배제되며, 연구 · 인력개발,⁴³⁾ 생산시설 등 투자세액공제⁴⁴⁾ 등에서 중소기업

40) 일반기업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외의 기업을 의미한다.

4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30조의6, 제30조의7, 제33조, 제38조 등.

42)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71조의2.

보다 중견기업의 혜택이 낮지만, 각종 고용지원관련 특례⁴⁵⁾는 국세와 달리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이렇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제혜택의 차이가 나는 것 중에서 주요 사항만을 정리하면 위 <표 2>와 같다.

이하에서는 국세를 중심으로 현재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하여 세제상 차별받는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고용지원 관련 조세특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Ⅲ.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연구개발 및 투자관련

가. 국내투자 효율성에 따른 세제지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세계경제는 고성장에서 저성장이 일 반적인 현상(Normal)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저성장 Normal에 따른 내수부진 과 고용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⁴⁶⁾ 세계화에 따른 기업의 해외진출도 중요하지만, 내수 시장의 진작을 위한 국내시설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많이 하면 국내 중소기업의 일감이 늘어나게 되고 국내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 그런데 한국경영자총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114조.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조~제103조.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5조~제118조.

46) 이영주 외 2인, 『넥스트노멀 시대 중견기업 글로벌화 전략 및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22-17), 산업연구원, 2022, 41면.

2025년 국내 대기업 중 61%가 긴축경영(투자 축소)을 계획하고 있어 2016년 이후 긴축경영(투자 축소)에 대한 답변이 가장 높았다.⁴⁷⁾ 그럼에도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공급망 재편정책에 맞춰 대기업의 대미 투자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⁴⁸⁾ 반면, 중견기업 중에서 49.6%가 전년보다 투자를 늘릴 계획이 있으며 해외(19.6%)보다 국내(80.4%)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예정이다. 투자대상은 기존 주력사업 확장(35.7%), 신사업 진출 강화(26.7%), 해외시장 진출 확대(17.0%), 노후설비 개선·교체(11.5%) 순이다.⁴⁹⁾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보다 더 많은 시설 투자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⁵⁰⁾

한편, 중소기업은 자산이나 유동성 규모면에서 중견기업보다 투자 여력이 적어 기술개발의 확장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2021년 이후 코로나 위기상황을 극복할 때에도 기업규모별 설비투자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설비투자가 감소한 것과 달리 제조업에서는 대기업이, 비제조업에서는 중견기업의 반등 폭이 더 높게 나타났다.⁵¹⁾ 국가

47) 연합뉴스, “내년 기업 절반 긴축…조직쇄신·사업매각·희망퇴직 이어질 듯”, 2024. 12. 1.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1034800003>(검색일 : 2025. 1. 26.).

48) 연합뉴스, “대미 투자 늘린 한국 기업들, 작년 로비 금액도 역대 최고 수준”, 2025. 1. 23.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3007500071?input=1195m>(검색일 : 2025. 1. 26.),

49) 한국중견기업 연합회, “2025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조사”, https://www.fomek.or.kr/main/newsroom/news/fomek_view.php?wr_id=1057(검색일 : 2025. 1. 26.).

50) EIB, *op cit.*, p.2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럽연합의 대다수 회원국은 중견기업을 매출액 규모가 아닌 상시 근로자 250명에서 3,000명 미만의 기업을 의미한다. EIB 보고서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250~499명인 기업을 소형 중견기업(small mid-caps), 500명~2,999명인 기업을 대형 중견기업(large mid-caps)으로 분류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소형 중견기업의 88% 이상과 대형 중견기업의 약 87%가 투자한 반면, 중소기업의 80% 미만과 초대기업의 약 86%가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51) 김빛마로 외 2인,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연구보고서 23-0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43~44면.

위기상황에서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것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전체 기업의 2% 수준인 중견·대기업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중견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대기업보다 2배 이상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당시에도 대일 의존도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⁵²⁾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견기업에 비해 더 많은 중소기업의 세제혜택이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지원금처럼 기업의 투자나 성장보다는 사업체의 생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본지출에 대한 세제혜택을 높이면 투자 동기를 더욱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⁵³⁾ 이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가에서 지난 20년 동안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였다. 우리 정부도 2022년 법인세율 인하(과세표준 구간별 1%p 하향 조정), 투자 세액공제 확대,⁵⁴⁾ 기업상속 공제 및 증여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매출 4천억→5천억 미만)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세제혜택을 늘려 왔다. 그러나 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세제지원 확대(38.0%)가 물가안정 및 내수활성화(21.6%), 금리인하(20.1%), 정책금융 강화(8.5%), 노동 등 경영 환경 개선(8.5%)보다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⁵⁵⁾ 결국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구개발, 투자촉진, 고용증대에서 세제혜택의 차별 개선이 중견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우선 과제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후단에서 정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생존보다 국내투자 여력이

52) 조상동, “주요국의 중견기업 지원 정책 동향 고찰”, 『KIAT 애자일』 2024년 제8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4, 9면.

53) Georgia Maffini, Jing Xing and Michael P. Devereux, The Impact of Investment Incentives : Evidence from UK Corporation Tax Returns, *Working paper*, Oxford University centre for Business Taxation, 2016, p.2.

54) 일반 분야 3→5→7%,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5→6→10%, 국가전략기술 분야 8→15%.

55) 한국중견기업 연합회, “2025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조사”, https://www.fomek.or.kr/main/newsroom/news/fomek_view.php?wr_id=1057(검색일 : 2025. 1. 26.).

있는 중견기업의 높은 경제기여도에 맞는 효율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하여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나. 기술개발 능력 및 효과 측면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사정상 미래성장 동력으로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일자리 창출 및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⁵⁶⁾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한 지원은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이 받는 세제혜택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커서 기술투자에 대한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지원이 해당 기업의 특허출원 수, R&D 지출, 매출액, 수출액 증대효과가 훨씬 크다는 실증분석 결과⁵⁷⁾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특히 정부지원이 기업자체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중소기업보다 중견기업이 98.1%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⁸⁾

유럽연합에서도 회원국의 무형자산, 특히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혁신⁵⁹⁾ 분야에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더 많이 투자하고 대기업보다는 약간 적게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견기업의 혁신가능성은 중소기업보다 훨씬 높으며, 대기업과는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⁶⁰⁾ 따라서 중견기업의 연구인력(상시근로자) 확충, 개발비 투자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면서 잃게 된 세제혜택에 상응하도록 중소기업보다 높거나 적어도 동일한 수준으로 세제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5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1항.

57) 이종호 외 3인, “정부 R&D 지원이 중견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비교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 2021, 157면.

58) 안승구 외 2인,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중견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효과”, 『기술혁신학회지』 제20권 제3호,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561면.

59) 혁신은 기업, 국가 또는 전 세계에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측정되며, R&D 투자 비중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60) EIB, *op cit.*, p.2.

또한, 일정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사이에도 세액감면의 차등을 주는 것만으로도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시도를 줄이고 절감된 조세지출을 성장이 필요한 업종의 중견기업에게 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중견기업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오히려 중소기업을 조기에 졸업하고자 하는 유인이 될 것이다.

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

현행 조세특례는 중견기업의 매출액(3천억원 또는 5천억원)을 기준으로 대기업에 적용되는 일반기업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자산규모의 변동은 법인세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⁶¹⁾ 매출액 기준으로 연구개발 조세특례 대상을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다. 또한 연간 조세지출 규모를 볼 때 일정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제율 구간을 나누는 것도 적절해 보인다. 중견기업 중에서 매출액 2천억원을 기준으로 정부지원에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촉진효과는 대형 중견기업보다 소형 중견기업(2천억원 이하)이 더 강하다.⁶²⁾ 실증 분석에 따르면 혁신성이 높은 기업이 높은 기술 기여도를 추구하고 있어 정부의 ‘승자선정’전략에도 부합한다.⁶³⁾ 즉, 조세정책의 실효성면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보다 오히려 중견기업의 혜택을 늘려

61) 한국표준산업분류표(대분류 또는 중분류)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거나 주된 업종에 상관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중견기업이 된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업종별 규모기준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택일주의였으나 2015. 1. 1.부터 3년 평균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변경된 것이다.

62) 안승구 외 2인, 앞의 논문, 562면.

63) Sergio Afcha, Analyzing the Interaction between R&D Subsidies and Firm's Innovation Strategy, *Journal of Technology Management & Innovation* Volume 7 Issue 3, Universidad Alberto Hurtado, Facultad de Economía y Negocios. 2012, p.67,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62762700_Analyzing_the_Interaction_between_RD_Subsidies_and_Firm's_Innovation_Strategy(검색일:2025. 5. 17.).

야 하고 중견기업도 투자효과(규모)에 따른 차등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이 대규모 성장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 미래투자 촉진세제⁶⁴⁾를 확충하면서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새로 창설한 점도 참고할 만하다. 이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⁶⁵⁾에 들 경우 기존의 특별상각 40% 또는 세액공제 4%에서 최대 특별상각 50% 또는 세액공제 6%까지 늘어난 혜택을 받게 된다.⁶⁶⁾

한편,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을 늘릴 때 예상할 수 있는 비판은 급격한 조세지출 우려일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조세지출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작년보다 6.6조원이 증가한 78조원(국세감면을 15.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15.2%)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었다.⁶⁷⁾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4년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귀속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총 4조 5,220원인데 수입금액 5천억 초과한 기업이 차지한 몫은 2조 6,499억원으로 전체의 58.6%를 차지하였다.

64) 지역의 특성을 살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주무대신의 확인을 거친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를 의미한다.

65) 다음 ①을 충족한 후 ② 또는 ③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은 특별상각 50% 또는 세액공제 5%를 적용받을 수 있다. : ①노동생산성 증가율 5% 이상이면서 투자수익 비율 5% 이상, ②최근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액 증가율이 8% 이상, ③대상 사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액이 3억엔 이상이며, 사업을 실시하는 기업의 전년도와 전전년도의 평균 부가가치액이 50억엔 이상 ; 이후 상기 ①~③을 충족한 후에 아래의 가~다를 충족하는 기업은 특별상각 50 또는 세액공제 6%를 받을 수 있다. : (가)임금수준·성장 의욕이 높은 중견기업(특정 중견기업자), (나)설비투자액이 10억엔 이상, (다)파트너십 구축 선언 등록을 받았을 것.

66) 中堅企業等の成長促進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 “中堅企業成長促進パッケージ”, 経済産業省, 2024. 3. 13., 6頁.

67)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2024. 10., 1면, 3~4면.

< 표 3 > 2023년 귀속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현황⁶⁸⁾

(단위 : 백만원)

수입금액	2023년 귀속 법인세				
	중소기업		일반법인		중소 +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공제액	신고 법인수	공제액	공제액
10억 이하	4,370	26,931	1	11	26,942
20억 이하	6,119	56,352	4	36	56,388
50억 이하	11,814	203,843	17	536	204,379
100억 이하	8,470	254,558	32	1,665	256,223
200억 이하	5,506	278,567	57	2,980	281,547
300억 이하	2,090	160,621	44	2,761	163,382
500억 이하	1,797	198,988	93	7,155	206,143
1,000억 이하	1,169	229,272	171	26,106	255,378
5,000억 이하	324	102,498	872	319,207	421,705
5,000억 초과	1	3,388	427	2,646,583	2,649,971
합계	41,660	1,515,018	1,718	3,007,040	4,522,058

그러나 중소기업에 들지 않는 일반기업 중에서 수입금액 5천억원이 초과하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88%(2,646,583 ÷ 3,007,040)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5천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이상으로 늘리더라도 조세지출 규모는 정부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세특례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정부의 단기적인 세입(稅入)을 포기하면서까지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고용창출 및 산업 인프라 등을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경제를 전인하기 위함이다. 즉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고용 및 향후 기업과 국가 경제발전에 중견기업의 역할이 크므로 단기적인 세수 감소에 정부가

68) 국세통계포털,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현황”(통계표 목록 : 8-3-3)을 정리한 것임.

연연해서는 안될 것이다.

2. 고용 및 향후 지속가능성 관련

가. 고용 및 소득증대 측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고용증대 면에서도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더 적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행 근로소득 증대와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는 상시 근로자(정규직 전환 포함)의 평균임금증가율⁶⁹⁾과 정규직 (상시)근로자 수⁷⁰⁾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우수 중견기업으로, 더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비정규직 비중을 높이거나 사내하청 등의 비정상적인 아웃소싱을 늘려 중소기업 범주 내에 머무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계열 및 공정분리를 통하여 여러 개의 중소기업으로 나뉘지는 편법을 쓰기도 하면서 200인 이하 사업장의 고용증가는 늘어난 반면, 300인 이상 고용한 기업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⁷¹⁾ 근로소득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20%인데 반해 중견기업은 절반인 10%에 불과하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액도 중소기업이 1인당 최대 1,450만원이지만 중견기업은 8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⁷²⁾

따라서 고용증대는 상용근로자 확대에 중점을 두되,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중소기업과 동일하거나 더 높여 임금인상에 대한 중견기업의 충격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의 높은 급여 등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국가경제 차원에서 더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효

69)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제1항~제3항.

70)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29조의7 제1항 등.

71) 조준모·황성수, “중견기업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이끌어야”, 『노동리뷰』 44호, 한국노동연구원, 2008, 48면, 51면.

72)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제1항, 같은 법 제29조의8 제1항 제1호.

과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의 평균 고용인원과 대졸초임 이상의 제조업체 비중은 중소기업 평균보다 10배 높다는 실증분석⁷³⁾이 이를 입증한다. 즉, 중소기업에 비해서 중견기업의 임금이 더 높고, 복지혜택도 크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의 세수도 증가할 수 있고, 가치분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도 커지게 되어 내수 진작 효과가 있다.

2024년 유럽투자은행(EIB)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생산성 향상과 혁신 촉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무형투자 형태인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보다 더 투자할 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자의 효과적인 교육과 능력향상이 기업의 미래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훈련비 투자비중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중견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다른 규모의 동종업체보다 높았으며, 소형 중견기업(상시근로자 250~499명)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보다 직원 1인당 교육훈련비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⁷⁴⁾

일본도 대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견기업의 국내투자와 고용 및 급여가 늘어 지방에도 양질의 고용제공·투자 수요 확대 등 산업의 신진대사의 수용처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성장과 소득향상에 공헌하는 (성장지향형) 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거둘 준비⁷⁵⁾를 하고 있다. 더 나아

73) 이종호 외 3인, 앞의 논문, 141면.

74) EIB, *op cit.*, p.3.

75) 일본은 2024년을 중견기업 원년으로 하여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각 부처의 중견기업이 활용 가능한 시책을 정리한 「중견기업 성장 촉진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각 부처에서 중견기업에 특히 효과적인 18개 사업을 엄선하여 총 190개 시책을 등록하였는데, (1)국내투자 확대와 혁신 촉진, (2)양질의 일자리 실현, (3)수출 지원, (4)경영기반 강화·정비를 주된 목표로 한다. 결국 성장의욕이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으로 매끄럽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일본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은 설비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규모 투자 촉진 세제를 확충하고, 중기청과 함께 중견기업에 적용할 임금인상 촉진세제와 경영개선 및 사업재생을 위해

가 대규모 설비투자 및 M&A나 그룹화를 통한 중견·중소기업의 신진대사와 수익력 향상을 위한 지원조치를 확대하고 있다.⁷⁶⁾

우리나라도 성장지향형 산업 전략을 구상하면서 2023년에 한시적으로 입법되었던 「중견기업법」을 상시화 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 때보다 중견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굳이 중견기업이 될 필요가 없다. 현재 조세특례의 기준이 되는 중견기업은 주요국과 달리 일괄적으로 평균 매출액이나 자산규모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검토가 필요한 이유이다.⁷⁷⁾ 최근 우리나라 등의 법제를 참고하여 중견기업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고 있는 일본도 종업원의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의 기준을 종업원 2,000명 이하⁷⁸⁾로 설정하였다. 중소기업일 때보다 근로자 교육훈련, 고용증대 및 임금인상의 효과가 큰 성장지향형 중견기업을 찾아 맞춤형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증대 세제특례는 단순히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을 적용하는 것보다 해외사례와 같이 종업원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의 기준을 달리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나. 중견기업 확대 및 지방경제 기여도 측면

기업규모별 무역수지를 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흑자를 보인 반면, 중

중견·중소 그룹화 세제를 마련할 방침이다(中堅企業等の成長促進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 前掲書, 1頁, 3頁).

76) 經濟産業政策局, “「産業競争力強化法の見直し」について”, 經濟産業省 資料4, 2023, 3頁.

77) 윤현석, “중견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일본의 사례와 비교 —”, 『중견기업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중견기업학회, 2024, 8면.

78)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에서는 기존 법령에서의 정의와 더불어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영의 고도화나 상권의 확대·사업의 다각화라는 비즈니스의 발전을 볼 수 있어 2,000명을 넘으면 충분히 생산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근거로 중견기업의 규모를 종업원수 2,000명 이하(대부분의 중견기업은 종업원 수백명 규모에 분포)로 하였다(經濟産業政策局, 上掲書, 15頁, 19頁).

소기업만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환율 및 유가 원자재 변동에 따른 경제위험에 대한 대처가 중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어렵다.⁷⁹⁾ 수출 또는 해외법인 기업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은 B2B거래 비중이 높아 규모가 클수록 국내 대기업과의 하도급 거래에서 매출과 종업원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⁸⁰⁾

일본도 중견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조직이 커지는(=대기업이 되는) 단계에서는 상권이 최대한 넓어지기 때문에 생산성은 최대치에 도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M&A를 촉진함으로써, 우량한 경영 노하우가 있는 기업이 경영자원을 집약해 수익과 임금 상승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검토하고 있다.⁸¹⁾ 우리나라도 현재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 세 특례⁸²⁾를 두고 있지만, M&A를 통해 중견기업이 될 때 감수해야 하는 세제혜택 축소에 비하면 비루한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도 일본처럼 M&A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규모를 확대하거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지원할 수 있게 현행 특례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중견기업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역별 중견기업 시책에 맞춰 지방소멸 문제를 연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현행 조세특례 중에서 법인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세제혜택이 있지만 지방의 장수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세제혜택은 없다.⁸³⁾ 노동집약적 산업을 운영

79) 최수호·김신중, “한국 수출액 대비 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의 수출액 변동률 : 중소기업의 현황과 발전 필요성”, 『유라시아연구』 제17권 제3호, (사)아시아·유럽 미래학회, 2020, 7~8면.

80) 이영주 외 2인, 앞의 보고서, 193~194면.

81) 經濟産業政策局, 前掲書, 15頁, 29頁.

82)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83) 경향신문, “아파트 민원에 향토기업 내쫓은 부산시…지역사회 반발에 뒷북 대책만”,

하는 중견기업은 같은 행정구역에 계속 존치할 때 가산점을 주어 노동인구를 유지⁸⁴⁾시킴으로써 지방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중견기업이 지방에 많이 입지하여 있고, 대기업을 웃도는 종업원 수와 총급여액 신장률을 보여주어⁸⁵⁾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우리나라는 조세특례 입법을 주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직하고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로 한정하지 않고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해결을 위해 중견기업의 근로자 확대를 지원할 조세정책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중견기업의 인적 가업승계 요건 완화

「중견기업법」은 제22조에서 중견기업의 경영혁신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경영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목적으로 주식을 처분하게 되어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기업해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과 관련한 세제지원을 늘려오고 있다.⁸⁶⁾

그런데 세법상 현재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로 인한 증여세 및 상속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인적 요소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반드시 수증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다.⁸⁷⁾ 한국인의 평

2024. 7. 30. 기사, <https://v.daum.net/v/20240730133134300>(검색일 : 2025. 2. 15.).

84) 대전일보, “지방 소재 수출기업, 인력난 심각…“인력 수도권 집중화””, 2024. 8. 8.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00723?from=kakao>(검색일 : 2025. 3. 24.).

85) 經濟産業政策局, 前掲書, 15頁.

86) 김신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고찰”, 『세무와 회계 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조세연구소, 2024, 47면.

87)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및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제5항 제2호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에게 60세 이상의 부모가 가업을 승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균 연령을 고려할 때 구멍가게가 아닌 매출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중견 기업에서는 이러한 필수 요건이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디지털 전환이나 경영관리 기능을 집약해 규모와 생산이 커지게 되어 경영자 개인으로 회사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사내 제도의 정비나 자회사·부문에 권한이양 등 그룹경영이 필요하게 된다.⁸⁸⁾

즉, 중견기업 규모의 기업은 자녀보다는 전문경영인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음에도 우리 세법은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현행 가업승계 과세특례는 중소기업통합, 법인전환과 같이 기업 구조조정 특례항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입법⁸⁹⁾하였음에도 기업의 존속이 아닌 경영권의 승계에 따른 세 부담 완화에만 집중하였다는 비판⁹⁰⁾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는 우리 세법이 가업의 승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인지 기업이 존속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기능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의 존속을 위해 반드시 직계 자녀가 경영권을 승계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독일헌법재판소도 가업승계의 목적이 세 부담 감소가 아닌 기업의 존속과 사회적 이익 실현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⁹¹⁾ 따라서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인적요건에 전문경영인을 선임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세법은 2023년 이후부터 가업상속 특례기업의 기준을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을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⁹²⁾하였음에도 「중견기업법」은 제15조에서 그 적용대상을 아직 3천억원 미만인 중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

88) 經濟産業政策局, 前掲書, 20頁.

8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0조의7.

90) 김신언, 앞의 논문, 64면.

91) BVerfG(Bundesverfassungsgericht), 2014. 12. 17., 1 BvL 21/12.

9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다. 중견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조세분야는 단지 선언적 의미로만 존재할 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IV. 결 론

조세특례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단기적으로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고용안정 등을 통해 국가경제를 견인하기 위함이다. 고용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면 부가적으로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늘어난 개인 및 기업의 소득으로 세수도 증가할 것이며, 역으로 재정지원 대상인 소외계층이 축소되므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게 된다. 국가산업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현실적인 연구 개발과 시설투자 및 고용확대 능력에서 중견기업의 기여도는 중소기업에 비해 월등하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를 인식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중견기업법」을 2023년 개정하여 상시적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을 성장사다리로서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우리나라의 기업 규모에 따른 세제상 차등 지원정책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되었고 아무런 비판 없이 이를 공평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수평적 공평 측면에서 아직 대기업이 되기 전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하는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에 비하여 과도하게 차별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지 않고 다음 단계인 대기업 혹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급격한 조세지원 축소의 충격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전단에서 강조한 과세의 (수직적) 공평을 위한 중소기업의 세제혜택은 같은 법 제3장 제1절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13개의 조세특례에 한정되어야 한다.

중산층이 두터울수록 건전한 사회구조가 되는 것처럼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의 수가 더 많아질수록 국가경제의 안정과 성장은 더 확고해질 수 있다. 중소기업을 빨리 졸업해야 중견기업으로서 더 많은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후단에서 명시한 대로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행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는 연구개발 및 투자, 고용증대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동일하거나 필요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중견기업에게 줄 수 있도록 전면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유럽과 같이 소규모 중견기업과 중규모 중견기업으로 구분하여 고용증대, 연구개발과 시설에 더 많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존의 중소기업 수준보다 늘려야 한다. 이미 실증분석에서 우리나라 중견기업은 제조업을 기준으로 매출액 2천억원, 일본은 종업원 수 2,000명 이하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일본처럼 지방소재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와 더불어 고용증대에 더 높은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새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參 考 文 獻

1. 국내 문헌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현안 자료집”, 2024. 6.
- 국회에산정책처,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2024. 10.
- 김빛마로 · 홍병진 · 홍용기,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연구보고서 23-0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발표”, 2025. 1. 6. 보도자료.
- 이영주 · 김정호 · 박영주, 『넥스트노멀 시대 중견기업 글로벌화 전략 및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22-17), 산업연구원, 2022.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4년 중견기업계 세제건의”, 2024. 3.
- 한국중견기업학회, “중견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쟁점”, 2024년 한국중견기업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24. 11.
- 김신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고찰”, 『세무와 회계 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조세연구소, 2024.
- 김영우, “프랑스 중견기업법의 제정배경과 시사점”, 『중견기업연구』 제3권 제1호, 한국중견기업학회, 2012.
- 노창호,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단지 Issue & Report』 2013-08 제6호, 한국산업단지공단, 2013.
- 안승구 · 김정호 · 김주일,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중견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효과”, 『기술혁신학회지』 제20권 제3호,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 윤현석, “중견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일본의 사례와 비교 —”, 『중견기업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중견기업학회, 2024.
- 이종호 · 심재윤 · 임채린 · 정우진, “정부 R&D 지원이 중견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비교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 2021.
- 조상동, “주요국의 중견기업 지원 정책 동향 고찰”, 『KIAT 애자일』 2024년 제8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4.

조준모 · 황성수, “중견기업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이끌어야”, 『노동리뷰』 44호, 한국노동연구원, 2008.

최수호 · 김신중, “한국 수출액 대비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의 수출액 변동률 : 중소기업의 현황과 발전 필요성”, 『유라시아연구』 제17권 제3호, (사) 아시아 · 유럽미래학회, 2020.

2. 국외 문헌

EIB, *Hidden champions, missed opportunities : Mid-caps' crucial roles in Europe's economic transition*, 2024.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executive summary of the evaluation”, 2022.

_____, *Study to map, measure and portray the EU mid-cap landscape*, 2022.

National Center for the Middle Market, “Year End 2021 Middle Market Indicator”, 2021.

Giorgia Maffini, Jing Xing and Michael P. Devereux, *The Impact of Investment Incentives : Evidence from UK Corporation Tax Returns*, *Working paper*, Oxford University centre for Business Taxation, 2016.

Sergio Afcha, *Analyzing the Interaction between R&D Subsidies and Firm's Innovation Strategy*, *Journal of Technology Management & Innovation* Volume 7 Issue 3, Universidad Alberto Hurtado, Facultad de Economía y Negocios, 2012.

經濟産業政策局, “「産業競争力強化法の見直し」について”, 經濟産業省 資料 4, 2023.

中堅企業等の成長促進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 “中堅企業成長促進パッケージ”, 經濟産業省, 2024. 3. 13.

<Abstract>

**Current Status of Tax Benefit Policies
and Improvement Tasks of Mid-cap Enterprises**

Kim, Shineon* & Koo, Sungkwon**

Discrimination in tax benefits according to the size and type of company is partially reasonable in terms of promoting fairness in taxation stipulated in the front section of Article 1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e current tax exemption system, which is concentrated on SMEs, is cited as the main factor in reviewing the return to SMEs after graduating from SMEs and growing into large companies. In terms of horizontal equity, it is difficult to find a legitimate legal reason for mid-cap enterprises to be sharply discriminated against in tax benefits such as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employment increase than SMEs.

In addition, discrimination in tax benefits according to the size of a company raises doubts about whether the tax policy set forth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1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is efficient. This is because various empirical analyses at domestic and abroad, such as export performance, employment expansion and wage growth capabilities, R&D, and investment indicators, have proven to be more efficient in expanding tax support for mid cap enterprises than SMEs. The current tax exemption system for mid cap enterprises needs to be redesigned so that they are not excessively disadvantageous compared to SMEs.

In specific, to promote R&D and investment, the benefits of mid cap enterprises with investment capacity should be increased beyond SMEs to eliminate incentives to return to SMEs. Customized tax support should be expanded by finding growth-oriented mid cap enterprises that are more effective in education and training for workers, increasing employment, and raising wages

* Primary Author : Certified Tax Attorney, Ph.D. in Korea, Attorney at law in Illinois, US

** Corresponding Author : Professor of Tax Accounting, Myoungji College

than SMEs. It is also necessary to prepare tax special cases to expand the size of the company through M&A so that high-quality mid cap enterprises such as Japan can concentrate management resources to promote profit and wage increases. In addition, exceptions should be made to appoint professional managers who are not beneficiaries or heirs as representatives by easing the requirements for human family business succession of mid cap enterprises.

▶ **Key Words** : mid cap enterprises, efficiency, R&D, investment promotion, employment increase